

최대 99%이고, 경기도민은 최대 39%까지 차지하고 있으며,

- [표1] 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만으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시에 주소만 두고 있는 위장 전입자들을 감안하면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,

○ [표2] 의 훈련사업비 부담내역을 보면, 서울시에서는 1993년부터 작년말까지 매년 최소 3억 2,500만원에서 최대 13억 7,058만원을 지원하였고,

-지난 8년간 총 75억 4,352만원을 훈련비 명목으로 지원하였음. 이는 총 훈련비용 140억 5,060만원의 약 5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서울시 지원 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

-반면, 경기도는 지난 8년 동안 단 한 차례 1억 8,975여 만원을 부담하였고 이는 총 훈련비용의 1%를 차지하며, 나머지 총 훈련비의 45%인 63억 1,732만원은 엘림복지회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음.

○ 서울특별시장의 제안이유를 보면,

-위 학교 설립당시인 1986년 8월 시흥군수로부터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시 경기도 주민의 입학요구가 있다,

-서울시에서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민도 수용할 계획이고, 구체적인 인원 배정은 시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는 공문을 회시한 바 있으며,

-또한, 2000년 10월 17일 군포시에서도 엘림직업전문학교가 군포시에 소재한 관계로 교통, 소방, 청소, 환경, 지방세 비과세 등 각종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어 이의 처리비용을 군포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군포시민도 입학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므로,

-서울시는 행정기관간의 약속이행 및 지역사회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"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입학할 수 있다"는 조항을 완화하여 엘림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경기도민도 입학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○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,

-시립직업전문학교는 지역내 저소득 시민

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입학지원자격을 그 지역내의 주민에게만 주는 것이 합당하나,

-엘림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소재지가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고, 건립당시 행정기관간의 약속이행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지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일정한 비율 범위내에서 경기도민에게도 지원자격을 주고 훈련비용을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, 이 경우에 서울시민과 경기도민(특히, 군포시민)의 비율, 그리고 훈련비용에 시설감각비용, 교육기자재 구입비용, 교사인건비 등도 포함시켜 적정수준을 위탁의뢰기관이 부담토록 세부적인 내용이 협정서나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.

서울특별시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조례  
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

□검 토 의 건

○ 서울특별시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조례는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당시('73.6.15)에 농가에 대하여 양곡대금 중 정부의 양곡관리기금에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을 서울특별시장이 자체 경지정리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였으나,

○ 서울시의 경우 1974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농가에 양곡을 대여한 실적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서울특별시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조례  
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